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공고 안내

- 트리븐 김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

1. 공급개요(입주자 모집공고)

- 공급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243-1번지 일원
- 공급 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26.6.19.(금) → [청약홈 청약신청] '26.6.29.(월)
※ 분양일정 및 공급내역은 인·허가 및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천 배정 세대수 : 7세대(예비 35세대)

구분	주택 유형(약식 표기)		계
	84A	84B	
추천(예비)	4(20)	3(15)	7(35)

2. 대상요건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제외업종 : ①일반유흥 주점업 ②무도유흥주점업 ③기타 주점업 ④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무도장 운영업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동일한 중소기업 근무 3년) 이상인 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대표자 및 법인 임원* 제외)
* 다만, ①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재직 ②고용보험 가입 ③실질적 근로 제공(급여수령)시 이사 및 감사 신청 가능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며,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
 -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 거주자이며,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 등 청약통장(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한 자 (시행사 안내문 참고)

3.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6.5.26.(화) ~ '26.5.2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 접수 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 해당 공고명 검색 및 신청
 -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대상 요건 확인 및 증빙자료 사전 제출 필수
- 신청서류 : [참고] 및 신청 홈페이지 참조(기간 내 온라인 업로드 필수)
- 신청취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2일 이내(18시까지) 중소기업 인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취하, 취하 번복은 불가함
- 추천자 선정 :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천
- 추천자 발표 : '26.6.24.(수), 추천자 및 예비자에 한하여 문자 안내
 - ※ 추천점수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에 공지
 - ※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주택형별 고득점순으로 추천하며, 발표일정은 시행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 본 공고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추천함
- 신청기한 이후에는 신청접수 불가, 가점 항목 미선택 및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 불가(특별공급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한을 반드시 준수)
 - ※ 가점항목 및 제출서류, 내용, 기준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 요망
- 청약자격 요건은 신청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추천 후 청약자격요건 불충족 등 사유에 따른 미청약시 감점사유에 해당함
 - ※ 무주택, 청약조건(청약예금 등), 분양가, 분양일정 등 관련사항은 시행사에 문의

-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중소기업 재직여부 및 기업규모 판단 불가능시 대상요건 및 재직기간 점수 불인정
 - ※ 사업자등록번호는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을 참고하여 기재(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자격 확인 - 주택소유 확인'을 통해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여부를 사전에 확인
 - * 무주택 판단기준 및 청약제도 제반 사항 문의 : 국토부 민원 콜센터(1599-0001)
 - ** 제출서류가 아닌 확인사항임
- 특별공급 추천시 시행사로 추천서를 직접 발송하므로 개별 추천서를 발행하지 않음
- 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서류의 위조 또는 주택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될 경우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추천 취소
- 특별공급 대상자는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기관추천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추천자에서 제외되어 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71호(2023.1.1.시행)」, 운영매뉴얼,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문 참고

※ 문의처

기관추천	055-268-2557	청약, 무주택 요건	1644-7445, 1599-0001
시행사	055-334-8100	시스템오류	1661-7616

- ◆ 서류는 신청기간 내 발급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대상자 요건 확인 등이 불가하여 신청 제외될 수 있음

※ 단,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내), 사업자등록증은 발급기간 예외

□ 기본 제출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2. 주택우선공급 서약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개인용) 1부
 - *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 www.4insure.or.kr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中 택 1
 - *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발급 가능
 - ☞ 이전 직장경력이 있을 경우 직장경력 내역이 나오게 발급받을 것 (내역에 없을시 근무경력 불인정)
6.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부기재)
 - *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7. 사업자등록증명 1부
8.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는 경우

- 개인사업자 :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법인사업자 :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조정 후수입금액 명세서, 최근 결산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합병분할시 전후 증빙자료

9. 법인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 임원에 관한 사항 포함)

10.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11. 추천(확인) 신청서 1부(별지1 또는 별지2)

□ 가점 서류

1. 제조소기업 재직근로자 : 현직장의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업종 : 제조업) 또는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2. 뿌리산업종사자 : 공장등록증명서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평가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중 택 1

* 뿌리산업의 범위 확인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內 뿌리기업 전문기업 지정 → 뿌리산업의 범위(<https://www.root-tech.org/certification/guide02.php>)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참고

3.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연구개발인력 현황 포함) 또는 연구전담부서인증서(연구개발인력 현황 포함) 1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4. 우수숙련기술자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증서 또는 숙련기술자전수자 증서, 우수숙련기술자증서 中 택1

5. 성과공제기금* 5년 만기자 :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 공제가입증명서(또는 만기증서), 납부확인서 각 1부

* 성과공제기금 : 내일채움공제(중기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중기부)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사본 또는 확인서

* Q-Net 발급 가능하며, 화면 캡처는 인정하지 않음

7. 수상경력 : 개인자격으로 수상한 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 1부(상패 등은 사진 사본으로 제출)

8.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신확인증 1부 (태아의 경우)
9. 주택건설지역 재직 : 주택건설지역 소재 또는 주택의 건설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 재직
10. 무주택기간 : 지방세 미과세증명서(세대구성원 전원, 15년간 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 1부(만 30세 이전 혼인 신고시)**

※ 무주택기간 증빙서류 발급 방법

- 건물등기부등본 : 무인발급기,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 건축물관리대장 : 구청, 동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24 홈페이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재산세(주택)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추가 제출(매각일자 확인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시 무주택세대구성원정보와 무주택기간을 정확히 입력

□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증빙자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제1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및 결과서류,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상속 여부 확인서류
- (제2호) 국토부 '씨리얼'*에서 면의 도시지역 여부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 신청자의 초본, 기본증명서
 - * 씨리얼 홈페이지 : seereal.lh.or.kr
- (제3호)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업종이 '주택판매' 또는 '분양' 목적으로 기입되어야 하고, 분양을 완료(소유권 이전) 결과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 필요
- (제4호) 현재 받아야 하는 서류는 별도로 정리되지 않음
- (제5호) 건축물관리대장(면적), 분양계약서(전용면적)
- (제7호) 폐가 사진, 공과금 증빙(물, 수도, 전기 등 사용 내역 없어야 함),

멸실신고에 따른 멸실등기

- **(제8호)** 신청자 본인이 질의하고 지자체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 * 건축물이 위치한 지자체 관련 부서로부터 해당 주택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 **(제10호)**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분양된 주택의 분양정보 및 주택 형별 경쟁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의 실거래 신고서 제출